



프랑스, 부유세 법안 수정 불가피

이정환 선임연구원

■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연소득 100만 유로(130만 달러)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75% 세율을 적용하는 프랑스 정부의 '부유세(tax on the wealthy)'¹⁾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림.

-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2012년 12월 29일 정부의 부유세가 "세금 납부의 평등을 보장하지 않는다"고 위헌 판결함.
- 부유세가 개인별 부과이기 때문에 가구(부부 합산)별로 부과하는 프랑스의 소득세법과 배치된다고 지적함.
 - 개인 소득이 연 100만 유로 이상일 경우 부유세 적용 대상이지만, 한 가구의 부부가 각각 90만 유로의 소득자일 경우 부유세 대상에서 제외됨.
- 이에 따라 2013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부과될 예정이었던 부유세 시행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짐.

■ 부유세 과세 대상과 금액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.

- 현재 판결에 근거해 프랑스 정부가 부유세 과세 대상을 가구당 소득으로 수정하면 합헌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과세 대상자도 늘어날 수 있음.
- 프랑스 정부는 2013년 신년사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정, 부자증세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힘.
- 전문가들은 현재의 위헌 지적을 반영하여 개인이 아닌 가구에 대해 적용하되 200만 유로 이상 소득 가구로 소득금액을 높이는 법안이 유력하다고 예상함.

(CNBC 등, 12/31)

1) 프랑스 정부는 2012년 현재 5.3%인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2013년 3%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 부유층을 중심으로 한 증세를 추진하였음. 또한 2012년 9월 부유세 도입과 함께 연소득 15만 유로 이상 소득자에 대해 45% 세율 구간을 신설하여 최고소득세율을 41%에서 45%로 높였음. 부유세가 시행될 경우 1,500여 명이 1인당 평균 13만 9,500 유로를 더 부담하여 2억 1,000만 유로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추산되었음.